

선물신고 제도 안내

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 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도 개요

- **근 거** : 공직자윤리법 제15조,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~제30조
- **신고의무자** : 공무원(의회의원 포함),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
- **대상 선물**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 부터 받은 선물

□ 신고요령 (절차)

선물받은 공직자

-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은
-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
- 해당 선물의 **시장가액이 10만원(미화 100달러)이상** 이거나 **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)**를 작성하여 **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제출**
- *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(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)

⇓ (신고서 제출)

소속기관·단체의 장

-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: 즉시 신고 접수
-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: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
- 10만원 이상 : 선물 신고 접수
- 10만원 미만 :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·유지

⇓ (이관,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)

등록기관의 장
(제주특별자치도지사)

- 선물의 재이관, 처분 등 사후관리

□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 등 가능